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76

2024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5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거주지 구분 없이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대 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5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76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의 재정적 지 원을 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청소년들은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1)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 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1]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기준2)

지원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 과정 신규 입학생
지원금액	- 초등 과정 : 80,000원 / 1인 - 중·고등 과정 : 150,000원 / 1인 - 통합 과정 : 초·중·고 일반학교 나이에 따라 1회 지급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입학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시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1호의 재정지원 경비 중 입학준비금을 안 제6조의2로 별도 신설하고 지급대상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6조의2제2호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뿐만이 아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인건비, 교육활동 운 영비, 학생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2] 2023~2024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현황

연도	구분	인건비 및 교육활동운영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사업방식	공모형	신청형	신청형
2023	지원기관수	47개 기관	48개 기관, 1,224명	36개 기관, 210명
	예산액	5,952백만원	1,350백만원	100백만원
	교부액	5,738백만원	1,133백만원	54백만원
	비고	재학중인 학교밖청소년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1식, 6천원, 180일 이내	초등 200천원 중·고등 300천원

¹⁾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지적사항(최재란 의원, 2024.9.4.): 거주지가 서울이고 타지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지적

^{2)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2024	사업방식	공모형	신청형	신청형
	지원기관수	48개 기관	47개 기관, 1430명	19개 기관, 138명
	예산액	5,820백만원	1,443백만원	27백만원
	교부액	5,636백만원	1,417백만원	18백만원
	비고	재학중인 학교밖청소년	1시 전인 100인 이네	초등 80천원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1식, 6천원, 180일 이내	중·고등 150천원

○ 그러나 학교를 통해 지원하는 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 급식비와 달리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속한 학생에게만 지 원됨으로써 타시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에 주소를 두 고 있음에도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형 평성 측면에서 입학준비금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서울은 학교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교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각 시도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3] 서울-경기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 지원 현황

연번	학생 거주지	학교 주소지	입학준비금 지급 여부	지급기관	근거
1	서울	서울	지급	서울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기관 지원 조례
2	서울	경기	미지급	-	-
3	경기	경기	지급	경기도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4	경기	서울	지급	서울시교육청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기관 지원 조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한 것인바, 입학준비금을 통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 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적 재정소요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대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 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여 계획적인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토론요지 :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급식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하는 신입생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또는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게 정 안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	제6조(재정지원) ①
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1 <u>급</u>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u>식비</u>
경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감
	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
	<u>생</u>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
	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u>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u>
	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
	<u>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u>
제7조(지도·감독) ①·② (생 략)	제7조(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현 행	개 정 안
	같음)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u>교육</u>	③ 교육기관
<u>기관</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또는 학생</u>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	
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